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 정 보 공 개 서

쿠산코리아(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09010050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11.0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5.21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0 길 13 마사빌딩 3 층 (신사동) 쿠산코리아(주)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Tel 1833-9383 Fax 02-3144-0128 <http://www.abiko.kr>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당사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2010.10.26	2010.11.01	쿠산코리아(주) 사업자등록번호 105-87-49920 법인등록번호 110111-4458025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쿠산코리아(주)	아비꼬 외 1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0 길 13 마사빌딩 3층 (신사동) 쿠산코리아(주)		
특수관계인 (임원)	김동완(대표이사) 최재석(대표이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김동완 최재석	1833-9383	02-3144-012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대표	김동완 쿠산코리아(주)	아비꼬 외 1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0길13 마사빌딩 3층 (신사동) 쿠산코리아(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동완 최재석	1833-9383	02-3144-012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대표	최재석	아비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0길13 마사빌딩		

쿠산코리아(주)	외 1개	3층 (신사동) 쿠산코리아(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동완 최재석	1833-9383	02-3144-0128
<b>이름/상호</b>	<b>영업표지</b>	<b>주 소</b>		
최재석 (주)어시스트키친	토리키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46, 13층 14호(청담동, 경원하이츠텔)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재석	-	02-6280-8005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아비꼬	아비꼬는 다양한 토핑이 곁들여진 일본식 카레 전문점입니다.
상 호	아비꼬 OO 점	아비꼬는 일본의 지명 이름입니다.
영업표지		-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9,432,221	6,577,669	2,854,552	25,618,199	2,018,058	1,773,175
2023년	9,585,465	5,417,969	4,167,496	26,720,973	1,674,840	1,312,305
2024년	9,653,285	5,030,687	4,622,598	28,012,796	1,297,742	955,740

그 근거자료는 별첨[재무현황]과 같습니다..

###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아비꼬] 가맹사업 외, [카네마야] 가맹사업도 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액은 [아비꼬], [카네마야] 직영점 운영 수익과 [아비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물류매출액으로 구성됩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관련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동완	2009.02 ~2010.10	아비꼬 대표	회사업무 총괄
		2010.10~현재	쿠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최재석	2009.02 ~2010.10	카네마야 상무	경영지원
		2019.11~현재	(주)어시스트키친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0	64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쿠산코리아(주)	가맹사업 경영	2011.09.29~현재	Kanemaya(카네마야) (등록번호: 20110100453)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임원 (대표이사)	(주)어시스트키친 /최재석	가맹사업 경영	2023.07.18~현재	토리키치(등록번호: 20221034)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명칭	허용범위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43 류	출원일 2009.06.26 등록일 2010.08.10	출원번호 4120090014434 등록번호 4101998890000	김동완	2020.08.10 (2020.08.10)
	43 류	출원일 2015.08.21 등록일 2016.03.17	출원번호 4120150039626 등록번호 4103527980000	김동완 최재석	2026.03.17 (2026.03.17)
	30 류	출원일 2015.08.21 등록일 2016.03.17	출원번호 4020150062042 등록번호 4011677080000	김동완 최재석	2026.03.17 (2026.03.17)
	43 류	출원일 2019.09.27	출원번호 4020190149048	김동완 최재석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상표는 현재 출원 중으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II. 가맹본부의 [아비꼬] 가맹사업 현황

###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 2009년 07월 10일

\*당사는 당사의 대표이사인 김동완 개인명의로 2009년 02월 23일부터 [아비꼬] 서교동점을 운영하여 오다 본격적인 가맹사업 전개를 위하여 당사를 2010년 10월 26일에 당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아비꼬	아비꼬	김동완	2009.02.23~2010.10.26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6-1 서교호텔별관 B106
아비꼬푸드(주)	아비꼬	김동완 최재석	2010.10.26~2013.11.29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5 상진빌딩 11층
쿠산코리아(주)	아비꼬	김동완 최재석	2013.11.29~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0길13 마사빌딩 3층

### 3. [아비꼬]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아비꼬	기타외식	카레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아비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117	94	23	118	95	23	123	97	26
서울	41	29	12	41	30	11	41	31	10
부산	6	3	3	6	3	3	6	3	3
대구	2	2		1	0	1	1		1
인천	6	6		12	12		12	12	
광주	2	2		2	2		3	3	
대전	1	1					1		1
울산	1	1		1	1		1	1	
세종	2	2		1	1				
경기	39	33	6	38	32	6	41	32	9
강원	4	4		4	4		4	4	
충북	3	3		2	2		1	1	
충남	2	1	1	2	1	1	2	1	1
전북	1	1		1	1		2	2	
전남	1	1		1	1		2	2	
경북	3	3		3	3		2	2	
경남	2	1	1	2	1	1	3	2	1
제주	1	1		1	1		1	1	

※당사는 상기 가맹점 외 해외 가맹점(뉴옥맨하탄점, 뉴저지점)이 있습니다.

## 5. 바로 전 3년간 [아비꼬]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92	16	0	14	2	94
2023	94	9	0	8	5	95
2024	95	14	0	12	8	97

### 6. [아비꼬]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아비꼬] 외에도 [1]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쿠산 코리아(주)	카네마야	20110100 453	외식	-/3	-/3	-/2
임원 (대표이사)	(주)어시스 트키친 /최재석	토리키치	20221034	기타외식	-/1	16/8	62/5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아비꼬] 가맹점사업자가 2024 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지역	전년 말 가맹점 수	전년 평균 매출액						비고 6개월미만 영업제외
		매출액	면적 3.3 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 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 m <sup>2</sup> 당	
전체	97	442,875	19,328	1,319,400	109,607	106,829	3,913	※2곳제외
서울	31	569,005	25,556	1,319,400	78,631	145,336	5,865	※1곳제외
부산	3	해당없음						5곳미만
대구		해당없음						
인천	12	469,805	23,611	986,463	109,607	174,829	9,201	※곳제외
광주	3	해당없음						5곳미만
대전		해당없음						
울산	1	해당없음						5곳미만
세종		해당없음						
경기	32	388,378	17,091	741,998	37,305	109,050	7,203	
강원	4	해당없음						5곳미만
충북	1	해당없음						5곳미만
충남	1	해당없음						5곳미만
전북	2	해당없음						5곳미만

전남	2	해당없음					5곳미만
경북	2	해당없음					5곳미만
경남	2	해당없음					5곳미만 ※1곳제외
제주	1	해당없음					5곳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매장의 POS 상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97개가 아닌 실제 95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97	1,969일

## 9. 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VAT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및 판촉	인터넷 등	연중	140,694	140,694	-

\*위 금액은 당사에서 경영중인 [아비꼬] 외 [카네마야]의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으로써 [아비꼬]의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위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수신상품부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02-2073-0987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인상품부)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인터넷뱅킹(www.kbstar.com) 접속 → ② (기업)클릭 → ③ (기업 서비스)클릭 → ④ (가맹금예치제도)클릭 → ⑤ (가맹점사업자)클릭 → ⑥ (가맹금예치금 예치)클릭 → ⑦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⑧ 가맹본부 (사업자번호) 입력 → ⑨ 가맹금예치 완료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계좌 개설시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b>필요서류</b>	<b>대리인 개설시</b>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	--------------------------------------------------------------------

\*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입금을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수입니다. 인터넷뱅킹 가입은 대리인을 통해서 불가능하여 본인이 직접 국민은행에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국민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맹금예치에 관한 업무는 매장 업무시간 (09:00~16:00) 에만 가능하며 휴일 및 토요일에는 불가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국민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아비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 포함)

구분	금액 (VAT 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100	계약 체결 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반환조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계약이 해지	- “저작물 등”의 사용허가와 제공 및 노하우의 전수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이 후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220 (3명기준, 1명 추가 시 55만원)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 또는 완료되면 반환되지 않음	- 오픈지도 (슈퍼바이저 1인 2~3일간) - 개점 전 조리/서비스/운영 교육

#### 2) 가맹이행보증금액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구분	금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가맹이행 보증금	300 만원 (VAT없음)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

	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포함)

구분	금액
합계	1,620
가맹비	1,100
교육비	220
가맹이행보증금	300(VAT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66m <sup>2</sup> 기준	면적 3.3 m <sup>2</sup> 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	7,315	365.7	-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별도 금액은 제외되었음	
인테리어	협력업체 외1	3,520	176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폭 있음(매장형태별,규격 초과, 인테리어 컨셉 선택 등)	
주방설비	협력업체 (미정)	1,430	71.5			
간판	협력업체 외1	550	27.5			
영업집기	협력업체	495	24.7			
의탁자	(미정)	440	해당없음			그릇 등 100종
기획관리비	가맹본부	660	33			바의자, 2인/4인 등
초도물품비	가맹본부	220	해당없음			3.3m <sup>2</sup> 당 (33만원, VAT포함)
					-	

별도	철거공사, 닥트공사, 전기승압 및 간선공사, 화장실공사, 냉/난방공사, 도시가스공사, 소방공사, 디스플레이 비품, 외부공사, 대형건물 등의 특수요구사항 등	매장상황,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
지연이자	상기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16)%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당사는 귀하에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인적성검사 실시 후)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가맹점사업자 전액부담 (카카오톡마케팅 선택시)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아래 표 참고		매월 고정금액을 월납방식으로 부과/ 후불로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6%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구분	최초계약 등 부과기준
로열티 금액	월 22만원 (부가세 포함)

지급기한 및 지급방법	매월 초(지정계좌)에서 인출(※익월 지급)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관리기준은 주방, 홀로 나누어 각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60점 미만의 경우 경고장이 발송됩니다. 1년 동안 경고 누적 3회 시 다음 해에 계약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번 누적 경고를 받은 매장은 필수적으로 재교육(재교육비 3명 기준 VAT포함 22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재교육 미 이수 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 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 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한 영업표지가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는 체결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가맹금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 대해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양수인의 인적성검사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행정적실비(550 만원, VAT 포함), 교육비(220 만원, VAT 포함), 가맹이행보증금(3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 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1,100 만원, VAT 포함), 교육비(220 만원, VAT 포함), 가맹이행보증금(300 만원, VAT 없음)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

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아비꼬”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반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종료 후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해지)시까지 성실하게 가맹점 영업활동을 계속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종료(해지)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가맹본부”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된 시설 인테리어 및 구조물 기타 “가맹본부”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일체의 상징이나 표시물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전시 또는 게시된 간판, 로고 기타 “가맹본부”를 표창하는 표시가 포함된 일체의 저작물, 매뉴판, 와이드칼라, 메뉴, 판넬, 기업판넬, 인터넷상의 표시(모바일 SNS 등 포함), 114안내 등을 즉시 제거, 철거 및 해지하여야 한다.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대여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 제2, 3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본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5. “가맹점사업자”가 제2,3항의 철거·원상복구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체기간에 따라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1일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 등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후 정산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2, 3항의 철거·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계약이행보증금 전액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7.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지급은 보류되며, 물류관련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정산 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주요품목은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지 않거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는 품목은 생략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없음

2.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메뉴,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의 판매

-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메뉴만 판매해야 합니다. 지정된 메뉴 외에 다른 메뉴를 판매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메뉴의 제한	위반 시 책임
V-3-3)의 메뉴명 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 및 용역의 판매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물품을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아비꼬]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

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03. 메뉴 명 및 판매가 참고)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카레를 판매하는 음식점	아비꼬	해당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① 2,000세대 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②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m (배달 미 실시에는 반경 100m 로 축소)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단, 상권 내 특수점포(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등)는 상위 2개 항목 설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해당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록 (특수상권은 입점건물만 설정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확정 경우에는 최상위 2개 항목(①, ②) 설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특수점포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직접 근무 여부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73%	27%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① [아비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 2 ]년입니다.  
(단, 계약종료일은 체결되는 월말을 기준으로 체결합니다)
- ②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

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6-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

- (1) “가맹점사업자”에게 제42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또는 통지 없이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영업양도 등을 하거나 상속을 하는 경우

- (3) 기타 본 계약상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 (1) “가맹점사업자”가 “운영규정”이나 매뉴얼 내 본 계약상의 기준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2)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이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점포 영업을 2일 이상 중단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에 규정된 광고나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경비의 부담을 요청 받고도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이하 “점포시설 등”)이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점포시설 등의 교체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 (6)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 . 부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7)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8)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영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규정한 홈서비스 “운영규정”에 위배된 사고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했을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조리매뉴얼 미 준수나 내점 및 홈 서비스 불량으로 “가맹본부”가 소비자로부터 2회 이상 항의를 받은 후 시정이 안되는 경우
- (1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정기 위생점검 및 QCS평가를 거부 및, QSC평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미달하거나 “가맹본부”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12)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13)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2회이상 잘못된 정보, 거짓 선동, 유포(온라인 포함) 등으로 인해 브랜드 및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는 서면에 따른 경고조치)
- (14)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매출향상을 실시하는 프로모션, 신메뉴 출시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까지 선동하는 행위를 할 경우
- (15)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

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개정된 법령의 취지(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또는 시정권고 포함)를 반영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귀하에게 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당사의 승인을 받은 정보가 거짓을 경우 모든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며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지위와 법적조치에 대한 비용(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양도받는 자는 기본적으로 당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단적 변경, 운영방침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양도사유가 사회적 문제(각종 범죄,이슈 등)에 해당될 경우 당사는 그 문제를 파악할 권한이 있으며 가맹사업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양도는 거부할 수 있으며 사유를 숙이고 양도절차가 완료되어도 새로운 양수자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있어 당사에게 손해 및 운영,계약 등의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6-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 3 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 계약의 종료 후 1 년동안 같은 영업지역 내에서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카레를 판매하는 음식점	국내 전 지역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아비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	------	----

10:00~22:00	365일 영업 (명절 제외)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휴점에 대한 기간은 최대 [ 30 ]일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 연장 시에는“가맹본부”와 협의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에 의거 오전 0 시 또는 1 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 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적인 영업시간 외 휴게시간을 지정할 경우 사전에 당사 및 담당 SV 에게 전달 및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으며 당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3명 이상	직접 근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리, 감독 항목	감독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정기 (순회점검)	매뉴얼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점검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년 4 회이상	운영팀
	서비스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및 유니폼 착용상태 점검	(항목에 맞게)	

		-> 점검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현장 점검 진행)  (방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청결 및 위생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점검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운영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운영상태 확인 -> 점검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 > 완료				
정기 (가맹평가)	QSC+V 평가	1 차 평가	2 차 평가	3 차 평가	4 회 이상 / 년 (불시점검 원칙)	운영팀
		전체 가맹점 대상	1 차 평가 D 등급	2 차 평가 D 등급		
		평가자매장방문 -> 매장평가 -> 평가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시정요구 및 PENALTY 부과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아비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광고	50%	50% (전체 가맹점 에 안분)	광고/판촉 진행 시 별도 협의
	브랜드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판촉	전국 및 지역별 판촉			
	개별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함, “영업비밀”에는 “아비꼬 경영”, “운영규정”, 조리방법 등 제 3 자가 인지할 경우에 “가맹본부”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이나 기술, 노하우, 매뉴얼 등이 포함됨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p>제 39 조 【손해배상 및 위약금】</p> <p>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오픈 전 해지할 경우 진행사항 범위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 또는 가맹비에서 금액을 정산 후 되돌려 준다. (상표, 브랜드 사용 60% , 상권조사 및 입점타당성 업무 등 40%)</p> <p>2. “가맹점사업자”가 오픈 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반환되나, 교육이수 시작 또는 중간에 특별한 사유없이 중단할 경우 교육기간에 관계없이 교육비는 반환되지 않는다.</p> <p>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내 “가맹본부”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해지 절차 또는 영업중단, 타브랜드(동일 아이템, 경쟁사 등) 개설 등 브랜드 이미지 훼손, 당사 노</p>

하루 등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최근 3개월 평균매출( POS 데이터 기준, 순매출)의 30%의 위약금을 청구한다.

4. 본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에 달리 명문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8 조 【점포 운영상의 준수사항】

6.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독단적으로 진행 후 브랜드 가치 및 훼손,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부분에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	45~52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7일~14일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예치 안내 -가맹계약체결	2일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확인	7일	
공사 착수	공사 실시	30일	
교육실시	운영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6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냉동고, 그릇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원/부재료 입고	1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판촉 및 홍보이벤트 -가맹금 수령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 민원 및 구청의 제재에 의한 공사지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판교체비용</li> <li>▶인테리어공사 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li>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lt;분할지급 시 절차&gt;</li>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li> </ul>	<p>점포환경 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p>

			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 4. 신용 제공 등 내역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해당사항 없음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아비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교육 (개점전)	브랜드 조리교육 서비스(CS)교육 가맹점사업자교육 현장교육(직영&교육기능매장)	실습교육 (당사가 지정한 매장)	6일 (이론교육, 현장실습, 휴무포함)	220만원 (VAT포함) (다만, 교육수료 후 테스트 미달 시 2일간 연장교육비용으로 재료비 포함 1인당 VAT포함 33만원 추가 발생)	필수 교육
재교육 (개점 후)	메뉴 제조방법 등	실습교육 (당사가 지정한 매장)	습득 정도에 따라 상이	3명 기준 220만원 (VAT포함)	필수 교육 (2번 누적 경고를 받은 매장에 한함)
신메뉴 교육 (개점후)	신메뉴 제조방법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메뉴에 따라 상이	실비	신메뉴 출시 시, 필수교육
정기교육 및 부정기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서비스기법 등	집체교육 or S/V를 통한 개별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필수 교육

###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 3.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해당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흥대 1 호점	마포구 서교동 356-1 번지 서교호텔별관 B106
2	서울	흥대 2 호점	마포구 서교동 355-34 번지 재강빌딩 1 층
3	서울	타임스퀘어점	영등포동 4 가 442 타임스퀘어 지하 1 층
4	경기	신세계 하남점	미사대로 750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백화점 지하 1 층
5	서울	롯데몰 은평점	통일로 1050(진관동, 롯데몰 은평점 4 층 아비꼬)
6	서울	대학로점	대학로 12 길 22 (동송동 1-66 번지)
7	경기	롯데몰 수원점	권선구 세화로 134 롯데몰 수원점 3 층
8	경기	롯데피트인 산본점	번영로 485 롯데피트인산본점 7 층 아비꼬 카네마야
9	부산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9 층
10	경기	롯데몰 수지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12 번길 27
11	충남	신세계 아라리오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4 층
12	서울	뉴코아 강남점	잠원동 뉴코아백화점 지하 1 층 아비꼬
13	서울	신사가로수길점	강남구 압구정로 10 길 37
14	경기	롯데아울렛 고양점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420 롯데아울렛 P1 층
15	경기	롯데백화점 분당점	분당구 황새울로 200 번길 45 B1 층
16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B1 층
17	서울	롯데백화점 미아점	강북구 도봉로 62 b2 층
18	부산	롯데백화점 동래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93 B1 층
19	경남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232 4 층
20	대구	광화문점	서울 종로구 종로 34 알파빌딩 1 층
21	서울	롯데백화점 대구점	태평로 161 롯데백화점 지하 2 층 아비꼬카레
22	서울	승례문점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 화남빌딩 1 층
23	경기	안양범계역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7 번길 45

24	대전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전 서구 계룡로 598 9 층
25	경기	롯데아울렛 기흥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고매로 124 지하 1 층
26	경기	NC 수원터미널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5 층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5년 6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624,224천원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직영점 운영기간이 1년 미만으로 1년 환산한 매출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필수품목리스트

■ 필수품목(강제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선택품목(권유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 필수품목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필수품목리스트를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가맹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필수품목 사용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별첨. 공급품목의 상하한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메뉴 명 및 판매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 메뉴 명 및 판매가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본사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 문서/가맹계약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인근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 3 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주)쿠산코리아    (인)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점주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 문서/가맹계약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인근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 3 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주)쿠산코리아    (인)

##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